

JDC 제주첨단 리슈빌(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8.06.)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월평동 717번지)
- 공급대상 : JDC 제주첨단 리슈빌(10년 공공임대주택) 59A형 30세대, 74형 10세대, 84형 5세대
- 입주자모집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이전 모집공고 이후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JDC 제주첨단 리슈빌은 **1세대 1건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JDC 제주첨단 리슈빌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상기 주택은 **청약접수와 서류제출을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로 받습니다.
 - (현장접수)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사무소(제주시 첨단로동길 24) ※ 208동 지하1층
 - (우편접수)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사무소 (우편번호 63309)
- ※ 우체국 등기우편 **2025.08.21.(목) 소인분까지 도착**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필수기재사항 및 서명 미기재 등은 접수 불가**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5.08.06.(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www.jdcente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실물 견본주택은 없으며 홈페이지 내 평면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됨)하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 전환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5.08.06.)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06.) 현재, JDC 제주첨단 리슈빌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 신청자격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접수일에 서류 미제출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구 분	신청 및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발표
일 시	2025.08.20.(수) ~ 08.21(목) 10:00 ~ 16:00	2025.10.17.(금)16:00
장 소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소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208동 지하1층)	-확인 방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www.jdcenter.com) 및 주택관리공단(www.kohom.or.kr)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타입별, 동별, 층별, 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접수(서류가 미비할 시 접수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JDC 제주첨단 리슈빌 공급(분양전환)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분양전환) 개요																
개 요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p>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p>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0.09.27.)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가격	<p>분양전환가격은 ①입주시점의 최초감정평가금액에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의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과 ②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중(④금액과 ②금액) 적은 금액으로 분양</p> <p>①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의 최초감정평가금액에 '2019년 주택도시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상 공공임대용자이율(연이율)인 2.3%(59㎡형)와 2.8%(74㎡형)를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 ※ 고정금리</p> <p style="text-align: center;">< 세대유형별 입주시점의 최초감정평가금액 범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초 감정평가금액 범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유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초 감정평가금액 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9㎡ A</td> <td style="text-align: center;">234,900,000원 ~ 261,7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4㎡</td> <td style="text-align: center;">295,250,000원 ~ 324,2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9㎡ B</td> <td style="text-align: center;">236,200,000원 ~ 258,8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4㎡</td> <td style="text-align: center;">332,400,000원 ~ 363,4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9㎡ C</td> <td style="text-align: center;">239,700,000원 ~ 262,7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각 세대별 최초감정평가금액은 계약체결 시 개별 통지</p> <p>② 분양전환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p>	세대유형	최초 감정평가금액 범위	세대유형	최초 감정평가금액 범위	59㎡ A	234,900,000원 ~ 261,700,000원	74㎡	295,250,000원 ~ 324,200,000원	59㎡ B	236,200,000원 ~ 258,800,000원	84㎡	332,400,000원 ~ 363,400,000원	59㎡ C	239,700,000원 ~ 262,700,000원	-	-
세대유형	최초 감정평가금액 범위	세대유형	최초 감정평가금액 범위														
59㎡ A	234,900,000원 ~ 261,700,000원	74㎡	295,250,000원 ~ 324,200,000원														
59㎡ B	236,200,000원 ~ 258,800,000원	84㎡	332,400,000원 ~ 363,400,000원														
59㎡ C	239,700,000원 ~ 262,700,000원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유의사항	<p>-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며 해당사항을 JDC제주첨단리슈빌 관리사무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서면 통지해야 함.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받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p> <p>-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p>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24(월평동 717번지)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 6층 14개동 전용면적 59㎡, 74㎡, 84㎡ 총 391세대 중 **예비입주자 45세대**
- 주차대수 : 총549대 (지하주차장 546대, 근린생활시설 3대)

2. 공급대상

번호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	건설호수	잔여 예비자수 (기선정)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최고 층수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391	19	45		
01	059.6836A	59A	59.6836	18.7850	7.3445	41.7799	127.5930	73.7453	187	3	30	6	`20.08. ~
02	059.6992B	59B	59.6992	18.7899	7.3464	41.7908	127.6263	73.7645	32	4	-	6	
03	059.9768C	59C	59.9768	18.8773	7.3806	41.9851	128.2198	74.1075	12	2	-	6	
04	074.6306	74	74.6306	23.4895	9.1839	52.2431	159.5471	92.2138	82	6	10	6	
05	084.8806	84	84.8806	26.7156	10.4454	59.4184	181.4600	104.8788	78	4	5	6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타입별로 신청 접수받습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슬래브 위 노출형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 전 세대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0.09.27.)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059.6836	59A	41,880,000	8,376,000	33,504,000	523,500
059.6992	59B	41,880,000	8,376,000	33,504,000	523,500
059.9768	59C	41,880,000	8,376,000	33,504,000	523,500
074.6306	74	46,068,000	9,213,000	36,855,000	670,080
084.8806	84	55,491,000	11,098,000	44,393,000	753,840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8.06.)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반영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059.6836	59A	40,000,000	200,000	81,880,000	323,500
059.6992	59B	40,000,000	200,000	81,880,000	323,500
059.9768	59C	40,000,000	200,000	81,880,000	323,500
074.6306	74	44,000,000	220,000	90,068,000	450,080
084.8806	84	53,000,000	265,000	108,491,000	488,840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원)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059.6836	59A	54,160	26,000,000	15,880,000	577,660
059.6992	59B	54,160	26,000,000	15,880,000	577,660
059.9768	59C	54,160	26,000,000	15,880,000	577,660
074.6306	74	56,250	27,000,000	19,068,000	726,330
084.8806	84	70,830	34,000,000	21,491,000	824,67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원)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059.6836	59A	135,349,000	12,187,000	123,162,000
059.6992	59B	135,279,000	12,190,000	123,088,000
059.9768	59C	136,468,000	12,246,000	124,221,000
074.6306	74	169,235,000	15,239,000	153,996,000
084.8806	84	190,930,000	17,332,000	173,598,00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0천원, 전용 85㎡이하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같은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한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 상기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액은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 ※ 단수 조정에 따른 차액이 있습니다.

4.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키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사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키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키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II 신청기준

1.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06.)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JDC 제주첨단 리슈빌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06.)** 이후 주택소유여부(분양권 등 포함)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여부(분양권 등 포함)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 구성원	<p>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p> <p>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p> <p>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p>
주택 및 분양권 등	<p>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은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자는 제외)
-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III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등

1.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방법 및 장소	비고
신청 및 서류접수	2025.08.20.(수) ~ 08.21.(목) 10:00 ~ 16:00 [인터넷신청 불가]	[현장 및 우편접수]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사무소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 2025년 08월 21일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 분까지 유효 함	·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 접수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0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서류 접수
예비입주자 발표	2025.10.17.(금) 16:00	[홈페이지에서 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www.jdcenter.com) 및 주택관리공단(www.kohom.or.kr)	· 예비입주자 순번은 (주)주택관리공단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 · 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JDC 또는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요망
계약체결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현장 계약]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사무소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며, 입금계좌는 추후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은 (주)주택관리공단 청약관리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됨을 알려 드립니다.
-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안내 등에 대한 안내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해 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사무소(☎064-752-8088)로 서면 통보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주택소유 여부 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됩니다.**

2. 신청방법

-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소(제주시 첨단로동길 24)에서 신청서 및 서류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가 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신 후 방문 및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2025.08.06.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06.)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할 경우 제출자의 신분증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필수 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제출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제출시는 신청자 및 제출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발급)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④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정자로 성명 기입) 후 제출) ※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⑤ 무주택 서약서 ※ 신청자 본인이 세대구성원을 대표하여 작성 제출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 초본 (2025.08.06.이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된 경우)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4.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enter.com) 및 주택관리공단(www.kohom.or.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기한 내 미소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5. 계약시 구비서류

- 입주 순번 도래 시 JDC제주첨단리슈빌관리소에서 유선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 별도 안내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지 및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하신 분은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사무소를 방문,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V 기타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홈페이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전혀 무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하신 날로부터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광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1.29.)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단열조치 준수	적 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 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 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 용
방습층 설치	적 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 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 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 용
열원 및 반송설비	적 용	조명설비 설치	적 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 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 용
고효율 전동기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 용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적 용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회사				감리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620-82-10410)	토목·건축· 기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314-81-07954)		신진종합토건 주식회사 (616-81-14972)	(주)삼우씨엠건축사 사무소 (215-81-25903)
	전기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 (125-81-42837)		미래이앤시 주식회사 (210-81-56599)	
	통신	세안이앤씨 주식회사 (120-81-17027)		대영이앤씨(주)(616-81-30443)	(주)목양종합건축사 사무소 (408-81-42391)
	소방	승림이앤씨(주) (110-81-75433)	환경이엔지(주) (203-81-43325)	주식회사 서린전기소방 (616-86-10267)	(주)윤엔지니어링 (616-81-70862)
	조경	자연제주(616-11-68612)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소 : 064-752-8088 (평일 : 09:00 ~ 18:0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064-797-5749 (평일 : 09:00 ~ 18:00) <p>※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전화 문의가 어렵습니다.</p>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장소에서의 임대공급관련 업무는 공고문에 정해진 일시에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임대공급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현장 및 우편접수 : 2025.08.20.(수) ~ 2025.08.21.(목) 10:00~16:00 • 현장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24, JDC 제주첨단 리슈빌 관리소 (208동 지하1층에 위치, 우편번호 63309) ■ 오시는 길 : 425, 426, 471, 472, 473, 490, 705 버스 이용

2025. 08. 0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